

HRD 훈련과정 신청을 위한 사전 내일배움카드 발급 안내

□ 안내목적

- 대한변리사회부설평생교육원은 2023년도부터 재직자와 실업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훈련과정 운영하였으며, 2024년 2월 실시 예정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신청에 필요한 [국민내일배움카드] 발급방법을 사전에 안내하고자함

□ 국민내일배움카드

가. 카드안내

-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 개발을 할 수 있도록 ‘국민내일배움카드’ 를 통해 고용노동부로서 승인된 교육과정 훈련비의 45~85% 국비 지원 받아 수강할 수 있음

나. 지원제외 대상

- 현직 공무원, 사립학교 교직원
- 만 75세 이상인 사람
-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
-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
-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
-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면서 45세 미만인 대규모기업종사자

다. 카드신청안내

- 고용센터 방문 또는 HRD-Net (www.hrd.go.kr)에서 회원가입 및 인증서 로그인 후 온라인 신청 (신청 후 1~2주 소요됨으로 사전발급 필요)

[발급신청]

- 직업훈련포털(www.hrd.go.kr) 접속 후 중앙 ‘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’ 클릭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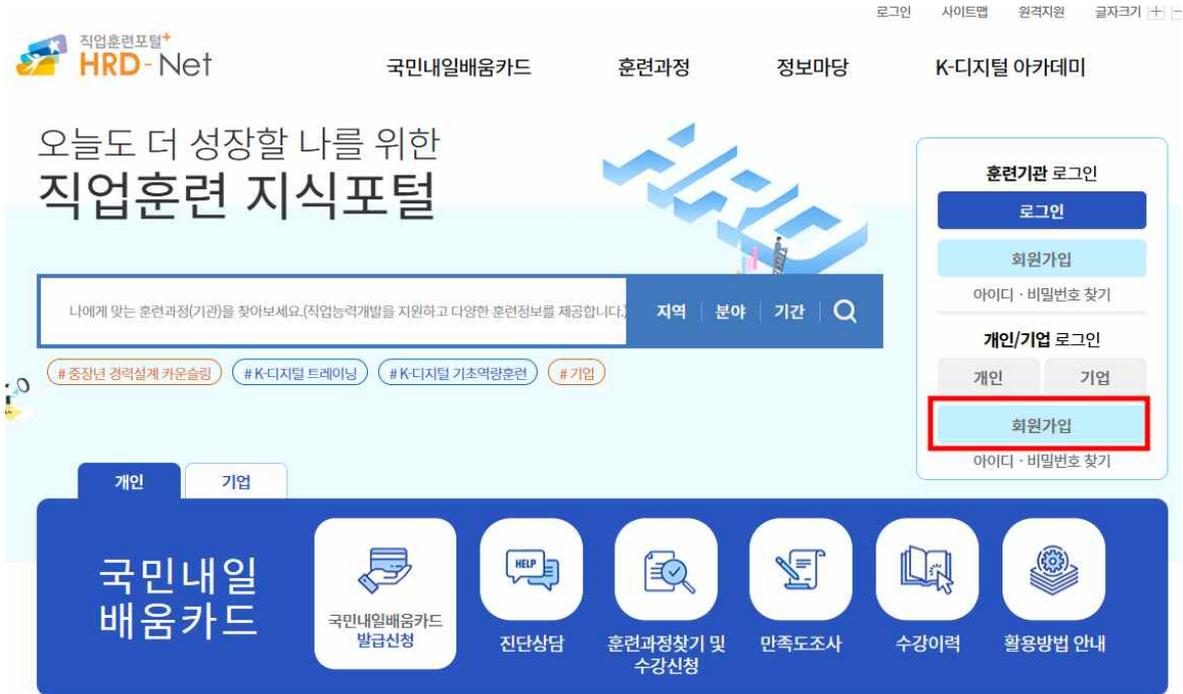
[빠르게 발급 받는 방법]

- ‘우편’이 아닌 ‘은행방문’으로 수령하면 빠르게 받아 볼 수 있습니다.
- ‘은행방문’으로 수령 시 수령이 어려운 지점이 있을 수 있어 필히 지점에 먼저 문의 후 신청 바랍니다.
- 농협, 신한은행의 신규 계좌 개설 시 20일 영업일 내에 타은행 계좌 개설한 이력이 있다면 카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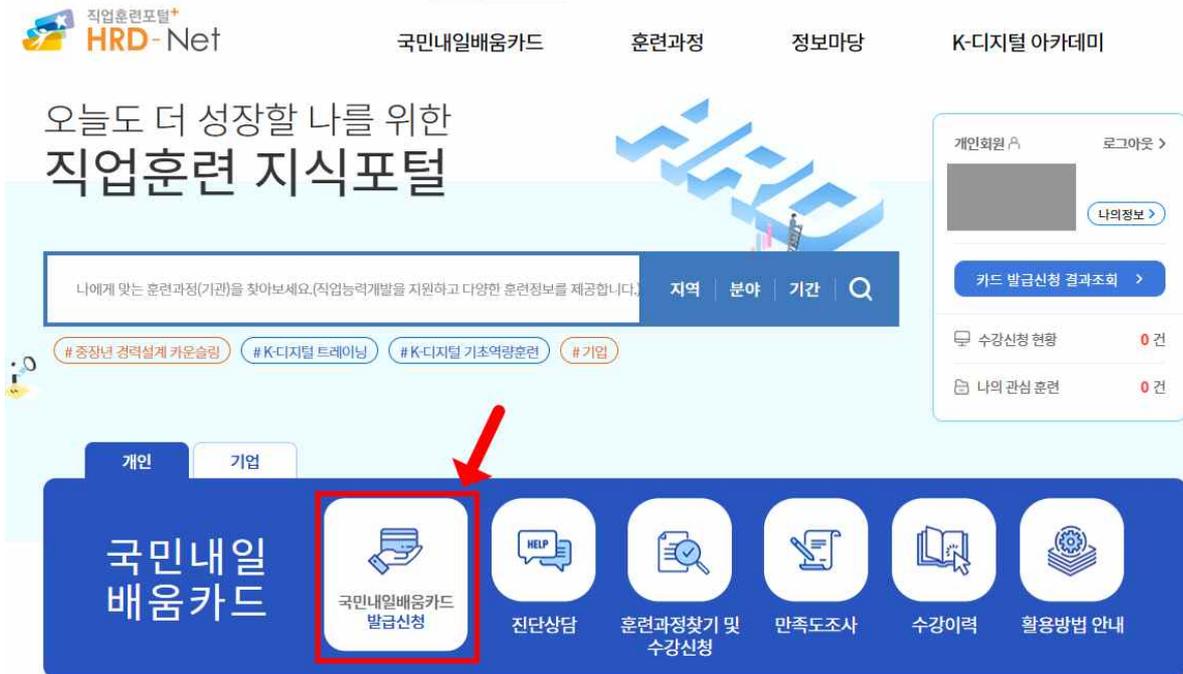
라. 발급 관련 문의처 : 고용노동부 콜센터 국번없이 1350

□ 신청 방법 (신규일 경우)

1. HRD-Net 홈페이지 접속 후 회원가입 클릭 (개인회원 가입)



2. 로그인 후 메인 페이지 발급 신청 클릭 및 > 실명인증 > 인증서 로그인 진행



□ 실시과정 안내

※훈련생의 계좌 잔액에 따라 실제 자비부담액은 달라질 수 있음

가. 국내 IP 관리 실무 인재 양성 교육

구분	내용		
훈련일	1.29(월)~2.1(목), 2.5(월)		훈련장소: 대한변리사회관 2층
훈련비용	수강료	239,840원	일반 훈련생 자비 부담액: 135,950원
훈련대상	특허법률사무소 관리직원 3년미만 재직자 또는 취업희망인 경우		
훈련내용	일정		강사
	1.29(월)	13:30~17:30	정진길 변리사 (특허법인 로울)
	1.30(화)	13:30~17:30	최현정 변리사 (아르고특허법률사무소)
	1.31(수)	13:30~17:30	김웅 변리사 (해움 특허법인)
	2.1(목)	13:30~17:30	박기선 변리사 (특허법인 이노뱅크)
2.5(월)	9:00~18:00		
		주제	
		출원	
		등록	
		실무	

나. 해외 IP 관리 실무 인재 양성 교육

구분	내용			
훈련일	2.14(수)~16(금), 2.20(화)~21(수)		훈련장소: 대한변리사회관 2층	
훈련비용	수강료	266,480원	일반 훈련생 자비 부담액: 145,270원	
훈련대상	특허법률사무소 관리직원 3년미만 재직자 또는 취업희망인 경우			
훈련내용	일정		강사 (리앤목특허법인)	
	2.14(수)	13:00~18:00	이호근 변리사	
	2.15(목)	10:00~13:00	이재연 변리사	
		13:00~14:00	점심시간	
		14:00~18:00	홍은경 부 장	
	2.16(금)	13:30~17:30	가나현 과 장	
	2.20(화)	10:00~13:00	백승혜 변리사	
		13:00~14:00	점심시간	
		14:00~18:00	이성화 변리사	
	2.21(수)	13:00~14:00	이지현 변리사	
		14:10~18:00	배수안 변리사	
			주제	
			출원	
		등록		
		실무		

□ 유의 사항

- 훈련비 지원 우대 유형인 경우 훈련비 자비부담 경감 및 면제 될 수 있으며, 이는 관할 고용센터 또는 'HRD-Net' 을 통해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. **관련 문의는 관할 고용센터**입니다.
- 1일 훈련시간 50% 미만 수강 및 지각/조퇴/외출 3회 시 1일 결석처리 됩니다.
- 총 결석시간이 **전체 훈련시간의 20% 초과되는 경우 제적**처리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(제적 시 **남은 수업 참가 불가** 및 **미수료/수강 포기 시 패널티 발생**)
-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총 수업시간의 1/2이 지난 경우 훈련비는 반환되지 않습니다.